

#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결혼·출산·양육 세제지원

(세제실 소득세제과, 권순배 서기관·우지완 사무관·신진욱 주무관, 044-215-4211)

## I. 추진 배경

-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\*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결혼·출산·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\*\* 필요

\* 출산율 추이: ('90) 1.57 → ('00) 1.48 → ('10) 1.22 → ('20) 0.84 → ('23) 0.72

\*\* 청년의 61%는 결혼의향이 있으나 자금부족(75.7%) 등 경제적 사유로 결혼 기피

## II. 정책 내용

- (결혼) ①혼인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적용하고 ②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을 단독가구 두배 수준으로 확대

① (결혼세액공제) 혼인신고 시 생애 한 번 1인당 50만원씩 '24년부터 '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

② (근로장려금 맞벌이 소득상한 인상)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확대(현행 3,800만원 미만 → 4,400만원 미만)하여 혼인 패널티 해소

- (출산·양육) ①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②자녀·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

① (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) 기업이 근로자의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

② (자녀세액공제 확대) 자녀당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(첫째·둘째·셋째 現 15 / 20 / 30 → 改 25 / 30 / 40)하여 부모양육부담 완화

## III. 성과 및 기대효과

- 결혼·출산·양육 전단계에 걸친 적극적인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심각한 저출생 현상 추세의 반전을 도모

○ (결혼) 결혼세액공제 신설,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

\* 정책 효과: (결혼세액) 혼인한 부부 19.4만쌍의 결혼 비용 경감  
(근로장려) 일하는 맞벌이 5만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확대

○ (출산·양육)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

\* 정책 효과: (출산지원) 신생아 25만명의 부모근로자 혜택  
(자녀세액) 근로자 221만명의 양육부담 경감